



2013 사회적 이슈와 인권

제3주제 **장기이식**과 건강하게 살 권리

장기이식의 개념

사람의 장기 또는 조직을 적출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로 옮기는 시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05호 2011.8.4 일부개정)

제4조(정의) 제1호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나. 골수·안구

다. 그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문제제기

장기이식 대기자 현황

(단위: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9,619	10,684	12,127	13,741	15,897	17,412	17,055	18,189	21,861	22,695

자료: 2012 통계연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홈페이지(<http://www.konos.go.kr>)

장기이식 현황

(단위: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살아있는 자	1,433	1,505	1,467	1,533	1,688	1,782	1,998	1,994
뇌사자 (장기 수: 개)	91 (397)	141 (596)	148 (665)	256 (1,134)	261 (1,118)	268 (1,108)	368 (1,548)	409 (1,751)

자료: 2012 통계연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홈페이지(<http://www.konos.go.kr>)

문제제기

장기기증희망자 현황

(단위: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35,286 (20,106)	77,035 (19,929)	90,636 (17,007)	81,095 (17,994)	74,751 (18,161)	184,764 (21,816)	124,245 (18,132)	94,758 (19,891)	87,788 (20,254)

* () 안은 골수기증 희망자 숫자

자료: 2012 통계연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홈페이지(<http://www.konos.go.kr>)

장기이식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1.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장기를 제공하는 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장기 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 이 경우 장기 등을 기증하려는 사람의 의사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2. 건강하게 살 권리 (장기를 제공받는 자)

장기이식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3. 해결방안

(1) 장기매매의 금지

(2) 자발적 장기기증

(3) 장기기증이 금지되는 경우

- ① 기증자의 제한
- ② 대상장기의 제한
- ③ 수증자의 제한

제11조 제3항 제1호 ~ 제4호
 16세 미만, 임신한 여성 등, 정신 질환자, 지적장애인, 항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 사람의 장기 등을 적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 제3호
 감염성병원체에 감염,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는 적출을 제한한다.

제11조 제5항
 신장 2개중 1개,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에 한하여 적출한다.

제11조 제4항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 (골수제외)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만 허용한다.

장기이식과 뇌사

1. 뇌사의 개념과 판정절차

- 뇌사(brain death)란

뇌가 죽은 상태로서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불가역적 소실상태)에 이른 것

- 뇌사판정 의료기관
 - 뇌사판정위원회
 - : 의학적 및 윤리적 판단

제16조 제3항
뇌사판정위원회는 (중략)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0. 5. 개정)

장기이식과 뇌사

2. 현행 장기이식법의 문제점

(1) 뇌사를 사망으로 볼 것인가?

제21조 제1항
 뇌사자가 이 법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경우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
 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제2항
 뇌사자의 사망시각은 뇌사판정위
 원회가 제18조 제2항에 따라 뇌사
 판정을 한 시각으로 한다.
 (2010. 5. 개정)

뇌사기증자 현황 (단위: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68	86	91	141	148	256	261	268	368	409

자료: 2012 통계연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홈페이지(<http://www.konos.go.kr>)

장기이식과 뇌사

2. 현행 장기이식법의 문제점

(2) 가족의 동의에 의한 장기적출

제12조 제1항 제2호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서면동의)가 필요한 선순위자의 수를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 (2010. 5. 개정)

(3) 미성년자의 장기적출

제22조 제1항
본인과 부모(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과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 적출가능.

토론

1.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없는 대상이 존재하는가?

2. 장기매매의 금지보다
환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3. 자신의 장기까지 팔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의 처지가 고려되어야 하지 않는가?